지방세 징수 유예 등

경상남도 세 정 과(☎055-221-3714)

함양군 재 무 과(☎055-960-4310)

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, 확진자 방문 등 직·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, 징수유예, 체납처분 유예 등 시행합니다.

○ 지원대상

- (개 인)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
- (사업자)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등 직·간접 피해자

□ 지원내용

- 기한연장 : 6개월(최대년) 범위내 신고·납부 등 기한연장
- * 취득세, 지방소득세, 주민세 사업소분
- 징수유예 : 6개월(최대 1년) 범위내 고지유예·분할고지·징수유예 ·체납액 징수유예 및 압류·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
- * 재산세, 자동차세
- 세무조사 유예 :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

○ 신청접수

- (신청방법) 함양군 재무과 방문·팩스·우편접수
- (구비서류) 기한연장 등 신청서,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

[관련법령] 지방세기본법 제26조,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105조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